7.3 모든 협력업체 및 근로자

- (1)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초기진화 할 수 없다면 즉시 그 장소를 신속히 벗어나 대피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.
- (2)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편한 장소에 소화기와 비상전화를 비치하고 소화기 (이산화탄소 및 건식 소화기)사용법을 교육시켜야 한다.
- (3) 가연성 폐자재는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일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8. 단열공사 중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대책

8.1 일반사항

- (1)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화기작업은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한다.
- (2) 우레탄을 사용하는 단열공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허가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 작업허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KOSHA GUIDE P-94-2012(안전작업허가지침)에 따른다.
 - (가) 작업개요
 - (나) 안전담당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
 - (다) 산소농도측정
 - (라) 인화성 가스 측정
 - (마) 환기설비 설치
 - (바) 연락설비 구비
 - (사) 개인보호구 지급 및 점검
 - (아) 방폭용 전기기계 · 기구의 사용
 - (자) 소화기 비치무
 - (차) 호흡용 보호구 비치
 - (카) 사고발생시 대응조치 계획